

# 풍수해 현장대응업무 분석을 통한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 대응편제 개발시 고려사항 연구

위금숙\* · 정안영\*\*

## Development Considerations of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Public Officers through Analysis of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at On-Scene

Kum Sook We\* and An Young Jeong\*\*

접수일자: 2013년 5월 3일/심사완료일: 2013년 6월 3일

**요약** 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 간에 신속하고도 단절됨이 없이 협력적으로 대응과 수습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업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재난현장 대응편제, 현장지휘체계, 지휘 조직도, 편제 운영원칙, 재난현장 대응활동, 기관 간 상호공조, 협력업무

**ABSTRACT** Standard Incident Command System in Korea is that Incident Command System for Emergency Rescue Operation, which is commanded only by Fire Fighting Agenc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the flood, storm, or landslide disaster, there are many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erformed by the General Public Officers at the disaster on-scene. Yet, there isn't an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Officers in Korea. Thus, we have studied the response activities needed cooperation among agencies and proposed some considerations of the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General Public Officers. The system will be useful to response and recover disaster rapidly, seamlessly, and cooperatively among General Public Officers and the related agencies.

**KEYWORDS** incident command system, ics structure, operation principle, on-scene operation, emergency response, cooperation among agencies

### 1. 서 론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 위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위험지역 내 개발난립 및 고층화, 지하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구밀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대규모화 되고 있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어떤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에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동의 현장대응 조직구조와 지휘운영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장지휘체계 또는 현장대응편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긴급구조 활동, 산불, 방사능방재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휘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일반직 공무원의 재난현장 대응활동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논문들도 대부분 삼풍백화점 붕괴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체계나 미국의 ICS 체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풍수해 대응활동에 대한 특성을 조사·분석한 현장지휘

\*정회원,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E-mail: chief@crisis.re.kr)

\*\*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

체계(또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풍수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과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와 운영원칙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이 수행하는 대응활동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유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풍수해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응급복구 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 및 긴급구조지원활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토사 제거, 배수, 급수 등의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소방기관, 경찰관서, 군 등의 활동은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장지휘체계 또는 현장대응편제와 관련한 법제도는 인터넷으로 조사하였으며, 계획과 매뉴얼은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풍수해 발생시 현장대응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침수와 산사태 시나리오로 훈련한 정읍시 등을 방문하여 참관하였으며, 우면산 산사태, 태풍 나리 등 실제 재난대응사례는 재난현장 대응경험자와의 인터뷰와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 3. 법제도 현황 분석

### 3.1 기본법의 현장지휘체계 현황 분석

우리나라 현행법상 현장지휘체계에 대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고, 표준현장지휘체계에 관한 내용은 긴급구조대

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은 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칙의 목적이 ‘긴급구조대응활동’으로 표기되어 있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구조활동’과 다소 차이가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현장지휘체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모든 대응업무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급수, 배수 등 소방기관이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소방기관이 현장에서 대응활동 시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무조건 ‘소방관서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긴급구조와 관련된 현장지휘체계 외에도 산불현장에서의 합동지휘체계(산림보호법 제37조), 방사능방재 대응활동이 요구되는 경우의 대응조직(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등이 존재한다.

### 3.2 중대본의 현장지휘체계 현황 분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상황관리규정 제12조에는 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계’가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비상지원본부가 현장지휘를 위한 조직처럼 되어 있다.

안전관리계획에서는 비상지원본부를 현장C.P.(Command Post)로 함께 표현하여 비상지원본부가 현장지휘소(Command Post)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다.

### 3.3 자연재해대책법의 현장지휘체계 현황 분석

비상지원본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한 비상지원본부가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

표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현장지휘체계 관련 규정

<p><b>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현장지휘)</b>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p> <p><b>동법 시행령 제59조(현장지휘체계)</b>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li> <li>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li> </ol> <p><b>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b>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표 2. 중대본 상황관리규정상 현장지휘체계 관련 규정

<p><b>중대본 상황관리규정 제12조(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계)</b>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권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p>
---

표 3. 자연재해대책법상 현장지휘체계 관련 규정

<p><b>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b> 시·도 및 시·군·구 본부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b>동법 시행령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b>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p>
---

로서 제36조에 의하면 ‘지역긴급지원’을 위한 곳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지휘를 위한 곳으로 되어있지 않다(표 3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재난발생시 현장대응을 위한 조직이나 지휘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 4. 풍수해 재난 현장대응업무 현황 분석

##### 4.1 풍수해 재난 현장대응업무 현황 조사

풍수해 발생시 현장 대응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대응업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현장

표 4. 우리나라 풍수해 재난대응업무 목록(일부)\*

재난 현장대응업무 목록(안)	법제도		계획 및 매뉴얼		훈련시나리오		실제 대응사례		구분
	기본법	지역안전 관리계획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읍시	노원구	우면산	태풍나리	
신고접수보고	○	○	○	○	○	○	○	○	지원
피해상황 분석	○	○	○	○	△	○	○	○	지원
현장안전 확인									보좌
유관기관 상황전파	○	○			○	○	○	○	보좌
(현장)지휘	○	○	○		○	○	○	○	대응
응급부담	○								대응
주민 안전정보제공(경보, 브리핑)			○(수습보도)		○	○	○	○	보좌
미디어 모니터링									보좌
대피(주민, 차량)	○		○(주민대피)		○	○	○	○	대응
진화 및유해화학물질 처리	○	○(위험물, 유독물)							대응
수색구조	○	○			○	○	○	○	대응
구급의료 및 사상자 이송	○(긴급수송)	○(긴급수송 포함)	○(응급의료소)		○	○	○	○	대응
사상자 신원확인			○(사망실종자처리)				○	○	대응
교통통제 및 치안(경비)	○(견인)	○(사회질서유지포함)			○	○(견인)	○	○	대응
안전선 설치			○(safety line)					○	대응
도로토사제거					○	○	○	○	대응
생활기반시설 복구(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정보통신)			○(전력)	○	○	○	대응
주택 붕괴 및 축사 침수		○(응급복구)			○	○	○	○	대응
산사태 및 제방 붕괴 유실					○(제방)	○	○	○	대응
수방 활동(공사장, 지하철 등)	○(수방)				○(농경지)	○	○(농경지)	○(농경지)	대응
쓰레기청소		○	○				○	○	대응
방역			○		○	○		○	대응
지휘용 통신 지원	○							○	지원
급식(대응요원)							○	○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	○(민간참여)			○		○	지원
동원 장비, 인력 확인 및 조달	○(직원파견)	○(동원요청)	○(지원요청)					○	지원
기록 관리								○	지원
VIP 의전							○		지원
이재민 구호	○	○	○		○(급수)	○	○	○	대응
성금 조달 홍보	○(행정재정조치)							○	보좌

\*본 연구에서는 재난 현황 대응업무 목록 도출을 위해 국내 법·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국가 재난관리기준(상호협력기능) 등을 참고하였다. 관련 계획 및 매뉴얼은 표 1의 문서 외에도 지역 재난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의2 참조),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풍수해), 비상대처계획(EAP)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나리오는 정읍시, 노원구 외 성남시도 분석하였으며, 실제 대응사례도 우면산, 태풍 나리(제주도) 외에도 2011년 발생한 춘천시 펜션 매몰사고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에는 지면상의 이유로 일부만을 수록한다.

조치행동매뉴얼을 살펴보고,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 정읍시와 노원구의 훈련내용과 우면산 산사태, 태풍 나리 등 실제 재난대응사례를 살펴보았다.

실제 풍수해 발생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사태, 침수, 제방 붕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대응업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협력필요 업무 도출**

재난은 일상적인 대응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읍시의 훈련에서는 표 5와 같이 대피나 긴급복구 등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현장 대응활동에 참여한다. 현장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도 다양하며, 각 자원 역시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재난현장에서의 원활한 대응활동을 위하여 다수 기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4.3 재난 현장대응업무 특성 분류**

도출된 재난 현장 대응업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업무는 매우 다양하며, 대응업무의 특성에 따라 직접 대응 업무, 대응 지원 업무, 현장지휘 보좌 업무로 구분하여 표 4의 우측 구분란 대응, 지원,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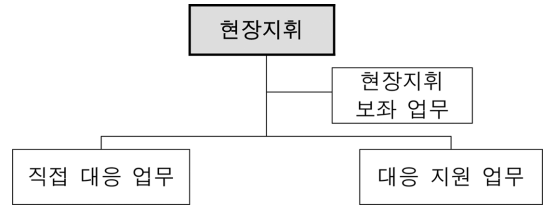


그림 1. 재난현장 대응업무 특성 분류

좌 등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직접 대응 업무란, 대피, 교통생활기반시설 등의 응급복구, 2차 피해 예방, 구호 등 대응인력들이 재난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접적인 대응업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 인력 및 대응 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하는 대응 지원 업무의 예로는 표 4와 같이 상황관리, 자원관리, 통신 지원, 대응요원 급식 및 급수 지원, 재정관리, 사상자 관리 등이 있다. 현장지휘 보좌 업무는 공보, 연락, 안전 등 현장 지휘자의 원활한 지휘활동을 위해 이를 보좌하는 업무이다.

업무특성의 분류는 현장대응편제 구성시 그림 1과 같이 조직체계를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5. 재난 현장 대응편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상의 재난현장대응업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재난의 특성과 재난대응업무의 특성,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

표 5. 대응업무 수행주체 및 필요 자원 보유기관\*

재난 현장 대응업무	참여기관	자원	자원보유기관
○ 대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소방서 정읍경찰서 군부대 정읍시 건축과 정읍시 축산과 정읍시 민생경제과 정읍시 산림녹지과 샘고을시장 상인회	앰프(통장, 이장단)	- 한국농어촌공사
		가축운반차량	- 정읍시 건축과
		대피유도인력	- 중앙 및 전라북도
			- 정읍소방서
			- 정읍경찰서
			- 군부대
			- 정읍시
- 샘고을시장 상인회			
○ 긴급복구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도기본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 건축기획과	- 조명차	- 서울지방경찰청
		- 위생차(화장실)	- 서울지방경찰청
		- 살수차	- 서울지방경찰청
		- 백호우	- 도기본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장
		- 덤프트럭	
		- 그레이드	
		- 바브켓	
		- 발전기	
		- 인력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장비	- SH공사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정읍시 훈련시나리오 참조

등의 특성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편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도출하였다.

**5.1 재난의 특성 고려 필요**

‘재난’은 일상적인 대응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로써, 간헐적이고 비정기적이어서 언제 발생할지 몰라 준비에 소홀해 질 가능성이 많으나,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재난대응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특성은 긴급한 대응을 요한다는 것, 대형 피해 발생으로 인해 일상적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재난현장에서는 여러 기관이 평시와는 다른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한 후 해제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한정적인 대응자원으로 인해 자원배분에 있어 조정과 기관 간 대응활동의 순서 조정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 현장 대응편제의 개발 시 긴급한 대응,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임시조직, 원활한 조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2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용 가능한 유연성**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는 다양한 대응업무가 발생하며 동일한 재난이라도, 피해상황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종류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재난 현장 대응편제는 다양한 재난대응업무와 재난대응인력의 규모에 있어 ‘유연’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3 기관 간 합동대응의 원활화를 위한 표준적 편제**

재난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해야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기관 간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표준’ 적인 재난 현장 대응편제가 필요가 있다.

**5.4 기관 간 대응업무 조율을 위한 합동지휘**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의 대응업무의 수행 순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기관을 대표하는 지휘자들은 합동으로 대응편제를 조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풍수해 발생으로 인해 고목이 전도되어 전선이 끊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장 도로복구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목의 제거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 관리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목이 제거된 이후에야 비로소 전선이 복

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 입은 지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방 복구, 도로복구, 주택 토사제거 등의 대응업무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피해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 순서를 결정하여 굴삭기를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기관 간 업무의 선후행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여 한정된 자원을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 자원배치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효율적인 조정은 재난상황 전체를 조망할 때 가능하다. 기관별 대응방식으로는 각 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난대응 성과측면에서 볼 때는 중요한 업무처리가 후선으로 밀리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합동지휘가 필요하다. 합동지휘는 전체 재난대응의 공동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기관별 대응력을 결집할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을 배치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5.5 지휘권자 변경의 유연성**

소규모 사고의 경우에는 다수 기관이 참여할 필요 없이 발생한 사고의 대응 주관기관이 빠른 시간에 수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 대응활동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지며, 풍수해와 같은 경우에는 사나흘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사안의 경우, 대응활동 기간에 주요 대응 업무는 바뀌게 되어있으며, 주요 대응 업무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지휘기관도 바뀌게 된다(횡적인 지휘권 이양).

이외에 현장지휘자가 바뀌는 경우는 처음에는 작은 사고였지만 시간 흐름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화되어 여러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거나 다른 지역에서부터 많은 대응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피해 지역의 상급기관으로 지휘권이 이양될 수도 있다(종적인 지휘권 이양).

이러한 지휘권 이양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위해 필요하며, 전후 지휘권자 간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재난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권자 간에 전달해야할 브리핑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한 원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5.6 기타 지휘 및 보고 계통, 통합적 지원관리 등 운영원칙 수립 필요**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대응업무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않도록 보고채널을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대응인력에게 여러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가 재난대응상황을 물어보거나 보고하도록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상위 보고는 긴급대응을 위한 비상조직상의 직상급자에게 보고하면 되도록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의 대응업무의 조율 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에 있는 여러 기관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난대응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 현장에서는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정보 공유가 필수적인데 이상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현장대응편제 지휘 및 운영원칙의 개발이 필요하다.

##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현장지휘체계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풍수해에 대한 현장지휘체계가 없음을 파악하였고, 풍수해 발생 시 재난현장의 대응업무의 분석 결과, 일반직 공무원과 유관기관들은 함께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재난대응 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대피, 긴급복구 등 한 대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하며 많은 대응자원을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재난대응업무의 특성을 분석하여 직접대응업무와 대응지원업무, 지휘보좌업무 등 대응업무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 특성은 현장대응편제의 조직체제도 구성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재난현장 대응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장대응편제를 개발할 때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재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제는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 기관이 참여하므로 표준화된 조직구조와 합동지휘구조, 그리고 지휘 및 운영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휘 및 운영원칙에는 현장 지휘 명령 및 보고 일원화 원칙, 현장자원의 통합관리 원칙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작은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재난까지 공백없는 재난대응을 위한 지휘권자 변경의 유연성이 담보되는 재난현장대응편제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려사항에 부합하는 풍수해 재난현장 일반직 대응편제가 개발된다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표준으로 제정할 필요

가 있으며 풍수해 발생시 참여하는 모든 대응요원에게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기관 간에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 및 수습 활동이 가능해져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제언으로는 본 풍수해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 대응편제는 어떠한 재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미국의 Incident Command System과 같이 국가표준의 현장대응편제(가칭)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긴급구조, 산불, 방사능 등 분야별로 개발되어 있는 현장지휘체계를 주관하는 기관들과의 검토협의 등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재난현장 지휘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프로그램 개발 -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 대응편제 및 지휘 운영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 [2012-NEMA05-003-01010000-2012]과제의 성과이다.

## 참고문헌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323호).
- 김경호 (2010),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영남대학교.
- 김천시 (2011),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p.14-60.
- 노원구,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012),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분야 재난대응 임무토의 자료.
- (사)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2010) 재난현장 상호공조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연구, 행정안전부.
- 소방방재청 (2012),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p4, pp.6-10.
- 위기관리연구소 (2009), 우리나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 기획연구 -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 재난대응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 제7편 재난현장지휘체계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1713호),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417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대통령훈령 제123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1346호),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69호).
- 제주시 (2011), 2007년 태풍 '나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보

고서.

연합뉴스 2011년 7월, 춘천 산사태 펜션 덮쳐 13명 사망 [http://www.ytn.co.kr/\\_ln/0115\\_201107271415277009](http://www.ytn.co.kr/_ln/0115_201107271415277009).

ALL HAZARD TRAINING, A Division of Early Alert 홈페이지

[http://allhazardtraining.com/NIMS\\_and\\_ICS.html](http://allhazardtraining.com/NIMS_and_ICS.html).

FEMA 홈페이지 <http://www.fema.gov/media/resources/korean.shtm>.

Homeland Security (2008),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Homeland Security (2008), National Response Framework.